

「서울형 뉴딜일자리 “인사/노무 전문가 양성교육 및 채용지원 사업”」 참여사업장 모집 공고

서울 시민에게 일경험 제공 및 직업역량 배양을 통해 참여자의 민간 일자리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「인사/노무 전문가 양성교육 및 채용지원 사업」 참여사업장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4. 12.

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협회

- 아 래 -

1. 사 업 명: 인사/노무 전문가 양성교육 및 채용지원 사업
(사업기간: 2023.2.22.~12.31, 10개월)
2. 공고기간: 2023. 04. 12.(수) ~ 04. 25.(화)
3. 접수기간: 2023. 04. 12.(수) ~ 04. 25.(화)(14일간)
4. 모집사업장: 본 사업에 참여하여 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사업장
5. 신청서류 접수처: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협회
- 이메일접수 : KLEAA@DAUM.NET

6. 신청자격

가.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자를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장 중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사업장

나. 참여요건(사업공고일 기준)

- ① 공고일 현재 사업장 본사 소재지가 서울시 또는 수도권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법인 및 개인사업장
- ② 구인하고자 하는 직무가 “인사/노무/세무/회계” 분야인 사업장
- ③ '23년 5월까지 인턴 채용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장(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턴 채용기한 연장 가능)

다. 사업 참여배제 사업장

- ①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(사업공고일 기준)
※ 단, 변호사/노무사/세무사/회계사 사무소(개인 또는 법인)은 예외로 인정
- ② 인턴 근무지가 서울시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인 아닌 경우
- ③ 구인직무가 “인사/노무/세무/회계” 분야가 아닌 경우
- ④ 채용한 인턴에게 “재택근무”를 실시하는 경우(자가격리 등 특수사유 제외)

- ⑤ 채용한 인턴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간접 고용형태로 사용하는 경우
 - ※ 파견, 용역근로자로 간접고용시
- ⑥ 4대보험 체납 또는 임금체불 중인 사업장
- ⑦ 주된 업종이 소비·향락업 등 업종인 경우
 - ※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
 - ※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'청소년 유해업소'에 해당하는 업종
 - ※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
 - ※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
- ⑧ 국가 및 공공기관, 지방공사, 지방기관 및 각 급 공립, 사립 학교
- 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등 최근 1년 내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업장

7. 신청서류

-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<필수>
- ② 사업자등록증 <필수>
- ③ 법인등기부(개인사업자 제외) <필수>
- ④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 명부(사업공고일 기준) <필수>
- ⑤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<필수>
- ⑥ 구인분야 직무기술서 <필수>
- ⑦ 강소기업 또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서 <선택>

8. 인턴 근로조건

- ① 임 금: 1일 89,256원 (월 2,331,820원)이상
(서울형 생활임금 시급 11,157원 준수)
※ 기본급(주휴수당 포함)에 한정, 식비 불포함, 법정수당 별도 지급
- ② 계약기간: 인턴채용시~계약만료시까지(최대 8개월, '23.12.31.까지)
- ③ 근무장소: 서울시 또는 서울시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에 한정
- ④ 채용직무: 인사/노무/세무/회계
- ⑤ 근로조건: 1일 8시간, 주 5일 근무 원칙
- ⑥ 4대 보험 의무가입
- ⑦ 연차휴가 부여: 1개월 재직시 연차휴가 1일 부여
- ⑧ 인턴기간 중 직무교육 여건 보장(교육 참석시 출근으로 인정)

9. 참여사업장 지원내용

- ① 인턴채용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지원(최대 8개월, 23.12.31까지)
: 월 2,686,000원 지원 (급여 2,331,820원 및 4대 보험료)

10. 선정 우대요건

- ① 인턴의 정규직 전환계획 여부
- ② 본 사업 기준임금 이상의 인턴임금 책정(기본급 기준)
- ③ 사업장의 직원 복지수준
- ④ 고용부에서 선정하는 강소기업 또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이력
- ⑤ 기타 우수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건 등

11. 선정 결과 발표: 2023. 5. 1.(월) 13:00이후

- 선정결과 통보: 개별통보(합격 및 불합격 모두) 또는 홈페이지 공고
 - ※ 선정 사업장은 사업시작 전 협약 체결
 - ※ 일정상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통보일자 조정 가능

12. 인턴채용 절차

- 인턴은 본 사업 참여하여 사전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음
 - ※ 사업수행기관이 보유한 인재풀에서만 인턴채용 가능
 - ※ 사업장에서 자체 모집/선발한 인원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- 선정된 사업장의 구인공고를 보고 참여자가 지원서를 제출하면 사업장에서 서류심사 및 면접을 실시하여 인턴 채용을 확정함
- 인턴채용은 5월말까지 확정해야 하며 근무개시일은 23.6.1.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(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기한 연장 가능)
- 근로계약서는 채용일에 작성하여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해야 함

13. 기타(유의)사항

- 참여사업장에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인공고에 지원한 참여자가 있고 인턴채용까지 완료해야 지원금 수령대상에 해당함
- 구인공고와 다른 업무를 시키거나 근로조건이 공고 내용과 다를 경우 사업참여가 취소 될 수 있음
- 인턴 임금을 기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나 사업장에 지급되는 지원금액은 동일함

-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심사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업장은 선정 결정을 취소함
- 인턴 채용자가 중도퇴사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이 퇴사사유를 검토하여 추가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시(해고 등) 추가 인턴채용이 불가함
- 사업수행기관이 참여사업장 점검시 부정한 사항을 적발하거나 사업참여에 부적절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
- 인턴 임금은 급여일에 법정수당을 포함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인턴의 임금 체불시 지원금 지급은 급여지급 완료시까지 보류됨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선정 결과 통보일 7일전까지 서울시 일자리포털 뉴딜일자리 공고란에 공고함

14. 공고내용 문의처: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협회 02-6378-3100